

배출 부과금제도의 개선사항



이 문 원 / 방림방적(주) 환경과 과장대리
서울 환경관리인협회의회장

서 언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업소에서 지역별, 규모별, 사업장별, 환경기준치에 적합하게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전미숙 또는 관리미숙, 기술부족등으로 배출허용기준의 기준치를 초과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대하여 지역별 또는 오염물질 발생량별, 오염물질의 유해정도에 따라 부과금을 차등부과 해오고 있는바 금년까지 부과를 하는동안 초기년도에는 부과금이 방지시설 운영비보다 훨씬 적게 부과됨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악덕기업이 많이 생기도록 조장한 결과도 있었지만 그간 수년간에 걸쳐 개정보완을 한결과 작금에는 어느정도 근접한 부과금을 부과하게 되었고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이제는 환경오염을 시키는 행위는 다른어느 범법행위보다 더 우선해서 중요시하게 생각하게 되었으며 경영인들의 관념도 환경관리를 소홀히하거나 잘못

하면 회사의 존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 들이는 추세로 되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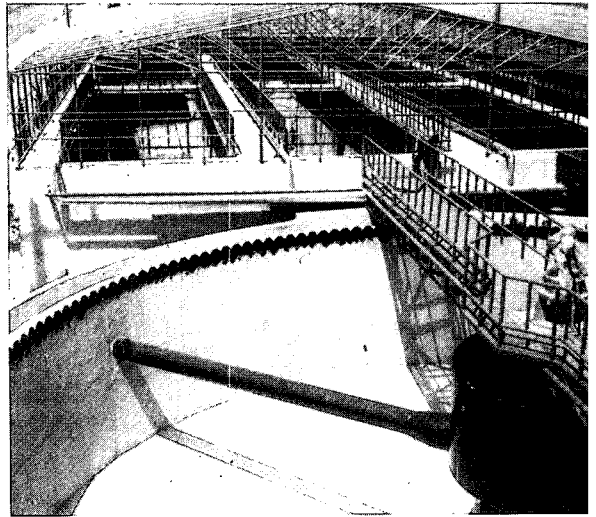
배출부과금의 심태

그동안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 측에서는 배출부과금을 납부한다고 하는 사실에서의 부담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또는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되었고 특히 일반대중을 상대로하는 기업측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것은 곧 그기업의 생산제품의 불매운동, 규탄대회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존폐위기까지 생각할정도로 환경에 대한 기업의 관심, 다시말하면 부과금의 관심은 최고 경영자까지 중요한 문제로 다루게 되었다. 현재의 부과금 산정지수로는 “오염물질kg당 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초과오염물질배출량×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지역별부과계수×년도별부과금산정계수

×위반횟수별부과계수”로 매년 산정지수가 올라가고 또한 2년 기간동안에 계속적인 오염을 유발할 경우 누진제가 되기때문에 기업측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오염유발이 되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수있다. 그러나 환경을 관리하는 환경관리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잔존하기에 일선에서 통상적으로 느끼는 사항에 대하여 보완점및 개선사항을 들어보기로한다.

배출부과금의 보완점및 개선사항

현재의 부과금의 종류나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첫째,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중금속 또는 다량의 유해물질을 함유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는 배출한 만큼의 중부과를 하는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유해물질 항목과 부담금에 대한 구분을 좀더 세분화하고 업종별 분류와 함께 대상물질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둘째, 모든 국도의 구석구석까지 오염물질에대한 규제는 마찬가지로겠지만 특히 대다수 국민이 밀집되어 살고있는 도시지역의 오염으로인한 주민의 피해에 대하여는 기준과 벌칙을 더욱 강화하여 생활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수차에 걸쳐 배출부과금 처분을 받은 업체를 보면 수질및 대기 기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업체도 많지만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않는 이른바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이화학 실험시설의 허가를 받지못한사항, 환경관계 법규의 잦은 변경으로인한 법규미숙지로 인해, 기존의 설치된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못한 사항등으로 인해 중벌을 받는등 환경오염 행위와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않거나 미약한 사항으로 인해 부과되는 부과금에 대하여는 기업체를 보호한다는 차원이나 제도한다는 차원에서 부과금조치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되며 관에서는 법규사항의 개정 또는 고시, 예규, 훈령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환경관리인들이 필히 알수있도록 해당업종별로 집체교육을 시킨다든지 공문서를 발송한다든



지 하는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물론 이러한 교육과 제도에도 시정또는 개선이 안될경우에는 경고등의 가벼운 벌칙도 가능하겠으나 직접적인 오염유발 행위와는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 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행정관청에서 특별점검 또는 정기검사에의해 업소를 점검하는데 통상 점검기관과 피점검자 간에는 갑과 을의 입장으로 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시료채취와 변명의 여지를 주지않는 상태에서 확일적인 단속을 하는 경우가있다. 환경을 지키는 사람이나 적발을 하는 사람이나 다같이 환경을 지키기위해 하는 동반자라고 볼때 죄인시 몰아붙임으로써 관리인들의 사기저하내지는 환경업무에 환멸을 느끼도록 하는 사태가 되지않아야 되겠다는 노파심이 생긴다. 관청에서는 환경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업소점검이 이루어진다면 좀더 성숙된 우리의 환경미래를 바라볼수 있으며 업소에서 만에하나 억울하게 부과금을 낸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배출업소의 오염물질 검사 시점에서 측정결과가 나오기까지 현재 15~20여일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배출업소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기간이라고 볼수있다. 더구나 직접 담당을 하고있는 담당자로서는 이 기간동안에 다른 업무에 집중할수 없을정도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실정이다(점검시 안심할수 있는 상태의 조

“

중금속등 유해물질의 항목을 세분화하고
부담금도 더 세분화하여 시료채취의
이원화로 서로의 불신과 오해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부과금으로 인한
부담과 또다른 부담이 없도록 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건이라 하더라도). 검사결과를 채취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BOD측정을 기준으로 할 경우)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혹시 배출업소에서 오염물질이 초과되었다고 가정했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오염이 가중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이 있는 업체만이라도 일주일 이내에 시험결과치를 업소에 통보하여주고 즉시 다시 채취 또는 검사를 하여 시험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생물학적인 처리방법일 경우 초기 채취 당시의 상태가 일주일이지났다고 크게 호전되었다고 보지 않으며 대기검사나 기타 측정결과,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일 경우도 일주일내에 결과를 알 수 있으면 그만큼 환경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일 2차 측정을 한 결과도 1차와 별 차이가 없거나 오염이 더 초과되었다고 할 경우에는 1, 2차 기간을 합하여 부과하고 1차에 초과가 되었으나 2차에는 이상이 없을 시 1차기간동안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업소측으로는 부담금을 타당하게 납부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따른 최신 시험기기 확보와 인원 보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측정결과치에 대하여 업소측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부당한 사항은 개선을 해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현재로서는 행정적인 지연 또는 공휴일 일요일이 끼었을 경우 늦게 결과가 나오므로 인해 배출기간의 연장으로 업소의 불이익을 초래하며 따라서 부담금도 더 부담하게 되고 개선결과보고도 늦게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2회를 채취(시간은 다르지만) 하므로써 서로의 오해소지(배출업소에서는 기준치 이내로 배출하여 하자가 없다고 하고 시험관청에서는 검사시험결

과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써 서로의 불신을 조장하고 근거자료가 남지 않기 때문에 항명하기도 어렵고)를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시료채취를 이원화하는 방법을 법제도화 시켰으면 하는 것이 모든 관리인들의 바램이다. 이원화 할 경우, 시험오차를 줄일 수 있으며 업소에서는 전술한 바와같이 부과금으로 인하여 금전적으로는 물론 이미지 손상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과금 처벌에는 절대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건의하고 싶다. 배출업소마다 특징은 있겠지만 혹시 운영상 일시적인 부하변동으로 인하여 기준치를 초과할 수도 있고 근무자의 운영조건상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위반된 업소는 재측정을 하여 확인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

결 언

배출부과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는 배출부과금의 실태에서와 같이 부담금제도의 문제점과 부과하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중금속등 유해물질의 항목을 세분화하고 부담금도 더 세분화하며 업종별 분류와 대상물질의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며 도심지역의 오염 또는 다수 인명에 피해를 주는 오염 행위에 대하여는 과중부과를 하고 직접적인 오염유발이 아닌 경우에는 계도 차원에서의 행정처리가 요망되며 업소 점검시 확실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성숙된 행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측정지연 및 검사결과 지연으로 인한 오염이 가중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시료채취의 이원화로 서로의 불신과 오해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부과금으로 인한 부담과 또다른 부담이 없도록 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환경보전과 환경관리에 모범이 되는 업소가 점점 더 많아짐으로써 관리인들이 자기직업에 투철한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의 환경은 개선되고, 부과금으로 인한 제반업무의 낭비요소가 없어지므로써 그 여력이 환경개선에 투자되는 풍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